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2011. 4.

본 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9년 1월 처음 발간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을 그 동안의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정·발간한 것입니다.

[자료문의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비은행결제팀 ☎ (02)750-663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 례

I.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개요	1
1. 자금이체업무의 개념	3
2. 자금이체업무 취급 경위	6
3.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7
II. 관련 법령 등	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2. 한국은행법	13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14
4.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19
III. 자금이체업무 수행 범위	23
1. 투자자예탁금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	25
2.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	35
3. 계좌개설 방식별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39
IV. 업무수행 방식	43
1. 금융투자회사 참가 소액결제시스템	45
2. 자금이체업무 수행	52
3. 차액결제대행업무 수행	62
4. 결제리스크 관리	76
V. 한국은행의 감시	81
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83
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감시	84
<별첨>	
1. 관련 법령(발췌)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1-2. 한국은행법	91
1-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92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97
1-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101
2. 기타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113
2-2. 순채무한도 설정협약서	118
2-3. 장애발생 통보서 서식	119
2-4.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공문(예시)	120
2-5. CMA업무 관련 모범규준(발췌)	121

참 고 차 례

<참고1>	지급수단의 이해	5
<참고2>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8
<참고3>	차액결제대행한도와 순채무한도	18
<참고4>	투자자예탁금 관련 용어	27
<참고5>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흐름(예시)	29
<참고6>	금융투자상품 계좌(증권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구조	34
<참고7>	계좌개설처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후 자금이체방식 ..	53
<참고8>	적정 순채무한도 수준 추정	55
<참고9>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용 계좌에 대한 일중당좌대출 관리	61
<참고10>	신탁수익권의 담보제공 및 실행	70

I .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개요

I.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개요

1. 자금이체업무의 개념

-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지급수단의 지급, 청산, 결제를 통해 해소
 - 지급의 수단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현금)와 현금 이외의 지급 수단(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자금이체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해당*
 - * <참고1> '지급수단의 이해' 참조
 - 현금의 경우 지급과 동시에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나 비현금 지급수단은 지급 이후 청산과 결제의 과정이 필요
- 자금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현금,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지급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이에 자금이체는 계좌이체란 용어와 혼용해서 쓰임
 - 자금이체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체뿐만 아니라 동일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체(자행내이체)도 포함하는 개념
- 자금이체업무란 금융기관 등이 계좌개설 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객의 입·출금지시를 처리하는 일련의 업무로서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청산·결제 등의 처리업무를 포함하며 상행위의 일종¹⁾으로 분류됨

1)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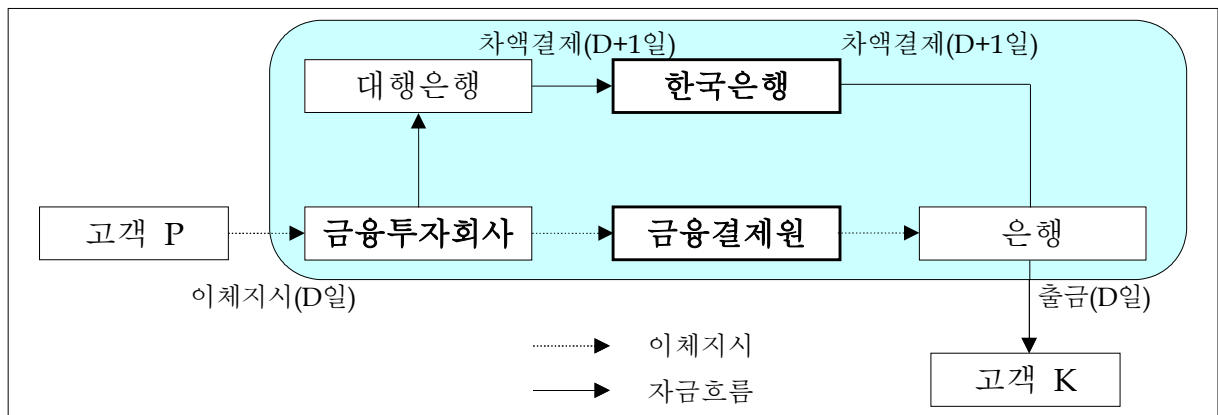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란 ‘자본시장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겸영업무로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고객이 증권계좌 자금의 입·출금이 수반되는 자금이체를 요구할 경우 동 자금이체 지시를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동 처리결과를 정산²⁾하여 익일 오전 차액결제를 이행하는 일련의 업무를 일컬음

* <참고2>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참조

—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자금이체 지시를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되 이에 따른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금융투자회사는 결제대금은 익일 차액결제시점(오전 11:00시)까지 대행은행앞 납입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수행 방식



2)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 수행

<참고1>

지급수단의 이해

- 지급수단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채무변제 수단으로서 크게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

(현금)

- 현금(화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며(한국은행법 제47·48조)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마무리 됨

(비현금 지급수단)

- **어음·수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표적인 장표방식 지급수단
 - 어음·수표는 그 성질에 따라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환어음·수표)으로 구분
- **자금이체(계좌이체)**는 지로, 타행환, CD/ATM,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짐
 - 지급지시의 주체에 따라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을 지시하여 자금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fer)**와 수취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출금이체(debit transfer)**로 나뉨
- **카드**는 소지인이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시점과 카드 발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선불카드로 구분
-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는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등이 있음
 -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물품·용역의 구매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범용성과 환금성이 뛰어나

2. 자금이체업무 취급 경위

□ 금융투자회사는 CMA 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CMA 가입고객에 대한 은행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한국증권금융, 증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CP, CD,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수시 입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

□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2005.12월) 및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향」(2006.2월)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 이후 한국은행, 재경부, 금감위(원)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훼손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등에 대해 합의

주요 합의내용

		내 용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참가
차액결제방식		결제대행은행이 수행
한국은행의 역할	대상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내용 (목적)	- 자료제출요구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지급결제의 원활한 운용) - 검사요구, 공동검사요구 (통화신용정책 수행)

□ 2007.8월 제정(2009.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투자회사가 겸영업무로서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3.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 2011.2월 현재 25개 금융투자회사가 6개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

— 8개 은행과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조원의 대행한도를 설정

○ 실시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1.8조원의 순채무한도를 설정

*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일부), PG(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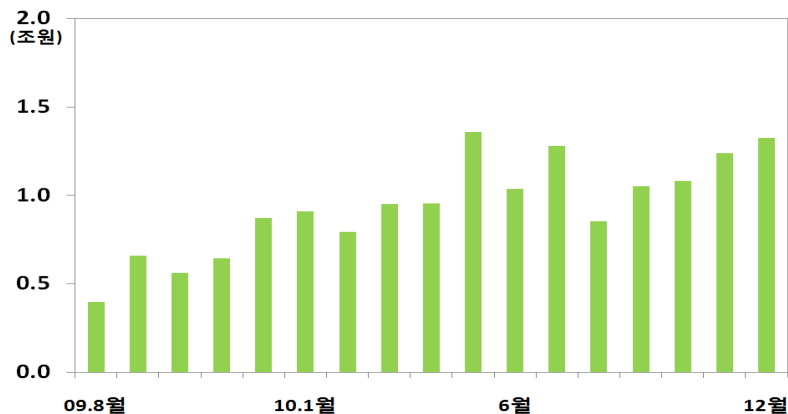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2011.3월 현재)

소액결제 시스템	전자금융 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CD 공동망	CMS	지로	PG
참가기관 수	25	21	15	25	21	16

□ 2009.7.3일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자금이체업무 개시를 시작으로 25개 금융투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자금이체업무를 개시

—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 취급규모도 점차 증가하여 2010.12월중 일평균 1.3조원에 달함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업무 취급규모 추이¹⁾



주: 1) 개인고객 기준, 2) 월중 일평균

<참고2>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동시결제시스템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금융기관간 콜거래자금, 증권거래대금, 외환거래대금, 소액결제시스템차액정산액 등을 결제
 -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지급거래를 처리하고 결제하는 소액대량 결제시스템
 -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전자화폐결제시스템 등이 있음
 -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매매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증권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의 소유권을 장부상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 앞으로 이전하는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권 매매대금은 한국은행 당좌예금 또는 시중은행 당좌예금을 통하여 결제
 -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며 CLS은행을 통해 외화가 동시에 결제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2월에 도입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	참가기관
거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	—	한국은행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은행, 우체국, 서민금융기관, 신협, 금융투자회사 등
증권결제시스템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선물시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장외시장	한국예탁결제원	—	
외환동시결제시스템	CLS은행	—	CLS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	은행

II. 관련 법령 등

II. 관련 법령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입법취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제정취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역할 및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
- 한편 자금이체업무 취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험을 상품화하고 이를 거래하는 금융투자업과는 기본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근거는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권역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임

나.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겸영업무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위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토록 제한적으로 허용(법 제40조 제4호)
 - 또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금전”으로 정의(법 제74조 제1항)
-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함(법 제74조 제4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할수 있게 함(영 제72조)

— 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차액결제대행한도 중 순채무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감독원앞 공동검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법 제419조 제3항)

※ <별첨>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조

2. 한국은행법

-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은 한국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참가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운영기준의 개선요청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81조)
- 또한 한은법 제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한은금융망 운영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가. 개관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은 총칙·지급결제제도의 운영·결제리스크의 관리·지급결제제도의 감시·보칙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하위규정인 세칙·절차규정에 위임
 -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정의규정과 함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목표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
 - 한은금융망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취급업무·가입자격·전문의 처리·업무지속성(BCP) 확보·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결제리스크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순채무한도제·사전담보제·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제와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감시업무의 범위, 감시대 상 시스템의 분류, 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요청 등을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차액결제대행제도)

□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차액결제업무는 한은 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업무를 처리하는 차액결제참가기관*(이하 '차액결제대행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규정 제25조 1항)

*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

—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차액결제를 이행하여야 함(규정 제25조 2항)

□ 다만 한국은행은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업무 대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규정 제32조 1항)

* 차액결제대행은행이 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또는 중지, 관련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받아 차액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행은행의 전산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급격한 유동성 악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차액결제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세칙 제81조)

(차액결제대행 승인)

□ 차액결제대행은행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대행을 신청하고 한국은행과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함(규정 제26조 1항)

* 대행은행은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 차액결제대행 신청서, 차액결제위탁기관과 체결한 차액결제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세칙 제73조)

<별첨>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참조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을 정함(규정 제26조 2항)

*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세칙 제74조)

- ①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원화 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 ② 차액결제대행계약에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 ③ 한 은행의 위탁기관 업종별 차액결제대행한도**가 위탁기관 업종 전체가 은행들에 위탁한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의 30% 이내일 것
단, 업종별 위탁기관의 수, 영업특성, 대행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 가능(세칙 제74조)

** <참고3> ‘차액결제대행한도와 순채무한도’ 참조

— 차액결제대행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서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승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승인기준 미충족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세칙 제76조 1항)

—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세칙 <별표3> 제1호~6호까지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에 승인을 신청해야 함(세칙 제76조 2항)

(순채무한도 관리)

□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총채가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미결제 순채무액의 상한(순채무한도)을 설정해야 함(규정 제19조)

*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 미결제 순채무액의 계산기간, 순채무한도의 설정·변경 관리 등에 대해서는 세칙 제59조~63조에서 자세히 규정

— 한국은행은 설정된 순채무한도가 해당 기관의 과거 순채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

관에 순채무한도 조정 요구 가능(규정 제20조)

(담보 납입)

-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차액결제대행계약에서 정한 차액결제대행한도 이상을 차액결제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함(규정 제28조 2항)
 -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을 포함한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납입해야하며 이 경우 담보증권 계산은 차액결제대행은행 담보증권 계산 기준을 준용(규정 제28조 1항)
 -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담보 중 적격담보증권에 대해서는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으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세칙 제78조)
-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차액결제대행한도 이상의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함(규정 제32조 2항)

(결제리스크 관련)

- 차액결제대행은행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해야 함(규정 제30조)
 - *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후 당일 중 상환하지 못한 경우 및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1일 이상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세칙 제79조)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차액결제위탁기관에 대해 결제리스크 감축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음(규정 제31조)

□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할 경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분담금은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을 포함한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규정 제29조 1항)

—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차액결제위탁기관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대상에서는 제외(규정 제32조 2항)

<참고3>

차액결제대행한도와 순채무한도

□ 차액결제대행한도는 대행은행이 차액결제위탁기관인 금융투자회사를 대신 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모든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채무 상한

— 순채무한도는 소액결제시스템중 실시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채무 상한

*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등

⇒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대행한도 범위 내에서 대행은행과 협의하여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며 필요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4.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가. 금융결제원 규정 개관

- 금융결제원은 기본규범인 정관을 바탕으로 세부 업무별로 규약 및 시행세칙·세부처리지침을 규정해 놓고 사업을 수행
- 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칙·업무처리·차액결제·보칙 등으로 구성
 -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 각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업별 적용업무의 종류 및 참가기관의 의무 등에 관해 규정
 -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
 - 업무처리 과정상 시스템장애·미완료거래·오류거래·취소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처리원칙
 - 긴급상황 발생시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긴급은행(기관) 지정 및 업무중지 조치, 이의 통보에 관한 사항
 -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가기관간 분쟁, 참가기관과 고객간 분쟁, 참가기관과 금융결제원간 분쟁에 관한 처리원칙*
 - * 지로시스템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처리원칙이 준용
 - 차액결제에 관한 사항에는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처리 및 자금조정 등을 규정
 - 보칙에는 참가기관 내 업무담당직원의 선임,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 간 자료의 배부·사용양식에 관한 사항, 참가기관의 규정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관련 주요 내용

(정관)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 지위를 득하여야 함(정관 제5조 제2항)

* 금융결제원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관

(업무규약)*

* 업무별 규약 공동 반영사항(전자금융·타행환·CD공동망 분류체계 기준)

① 업무처리

□ 업무참가

- 차액결제위탁기관이 금융결제원의 개별 업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함
-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차액결제위탁기관간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기타 결제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체결된 차액결제대행계약에 의해 처리(지로, CMS공동이용 업무규약에는 미반영)
- 특별 참가기관인 금융투자회사는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참가기관의 의무

-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대행은행을 통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대행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차액결제위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봄
- 참가기관은 고객의 업무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PG, CMS공동이용 업무규약에는 미반영)

□ 긴급상황시의 처리

- 참가기관이 차액결제대금 미납, 경영상의 문제로 업무참가 불가,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해당기관을 긴급기관으로 결정하고 업무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가기관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나 자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결제원에 통지하고,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에 동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PG 업무규약에는 미반영)
- 참가기관은 장애발생으로 해당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장애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금융결제원 앞으로 송부해야 함

* <별첨> 2-3. '장애발생 통보서 서식' 참조

② 차액결제

□ 거래차액의 결제

-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대행은행앞 차액결제대금 통지시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도 통지하고 한국은행으로 차액결제

의뢰시 위탁기관의 결제금액을 대행은행의 결제금액에 합산하여 의뢰

○ 한국은행은 이에 의거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대차대체로써 결제를 완료하고 이를 해당 참가기관에 통지

— 예외적으로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대금을 위탁기관에만 통지하고, 한국은행에 동 거래차액을 서면으로 결제 의뢰

○ 한국은행은 이에 의거 위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 대차대체로써 동 거래차액을 결제하고 이를 해당 위탁기관에 통지

③ 보칙

□ 제재

— 참가기관이 규약의 제반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해당기관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가 법인고객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시스템 이용제한, 과태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태금

— 결제대금납입 지연, 업무개시지연, 고의로 시스템을 중단, 장애 발생 지연 통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기관은 각 규약에서 정하는 과태금(1천원~50만원)을 납입해야 함

Ⅲ. 자금이체업무 수행 범위

Ⅲ. 자금이체업무 수행 범위

1. 투자자예탁금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

- 자본시장법(제40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 대상은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한정
 -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계좌내 자산평가액이 아닌 현금인출가능액 부분으로 가치변동 리스크가 없고, 예금보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권금융 별도 예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리스크로부터 안전

가. 투자자예탁금

(정의)

-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금전을 의미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
 - 따라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 예컨대 신탁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은 경우 이를 투자자예탁금으로 보지는 않음
- 금융투자상품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은 넓게 보아 모두 예탁된 투자자예탁금으로 보며,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에 예치한 금전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매수 후 계좌에 남은 금전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 취득한 금전 등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

- 투자자예탁금은 별도예치(자본시장법 제74조) 및 예금자보호(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
 -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다른 기관(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신뢰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도입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별도예치대상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예탁금의 100% 이상을 예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제2항)하여야 하며, 예치의 방법으로 예수금 예치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예치의 법적 성질은 소비임치 또는 신탁법상 신탁행위로서 이에 따라 예탁금의 소유권은 한국증권금융으로 이전되고 금융투자회사는 증권금융에 대해 원리금 및 수익에 관한 채권을 취득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현황

(2011년 1월말)

(단위 : 억원, 개)

	신탁	예수금	계
투자자예탁금 (비율)	154,969 (99.77%)	355 (0.23%)	155,324 (100%)
회사수	25	1	25

주 :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25개 금융투자회사 기준, 자료 : 한국증권금융

- 별도예치대상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위탁자예수금 · 장내과생상품거래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조건부예수금 등이며, 예치액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청약자예수금 · 제세금예수금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매매증거금 · 위탁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영 제75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제1항)
- * <참고4> '투자자예탁금 관련 용어' 참조

- 금융투자회사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D일) 단위로 산정하여 익영업일(D+1일)에 예치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경우 해당 영업일(D일)에 예치(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제3항)
 - 다만 장내과생상품거래예수금만 예치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시점을 지나 입금된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은 익영업일에 예치 가능
-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고(영 제75조 제4항) 일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운용하여야 하며(법 제74조 제7항 등), 금융투자회사의 인출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금액만큼 인출에 응함(영 제75조 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참고4>

투자자예탁금 관련 용어

- 위탁자예수금 : 위탁매매 등에 수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 현금 및 위탁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 장내과생상품거래예수금 : 장내과생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예탁한 현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집합투자증권의 모집·매출·매각·환매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예수금
- 조건부예수금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제세금예수금 :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해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해 예탁된 금전

(투자자예탁금 정산 등)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시간 개시 전(통상 09:00 이전)에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영업자금(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의 자금이체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사용

* 증권금융회사는 해당 영업자금을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내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자금을 지급

— 인출한도는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 있음(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제3항 제1호)

○ 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3-18조)은 100분의 5를 인출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들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을 당일 영업자금으로 인출

* <참고5>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흐름(예시)' 참조

□ 영업종료 후(통상 17:00~18:00) 금융투자회사와 증권금융회사 간 투자자예탁금을 정산

— 금융투자회사는 의무예치액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이미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이 예치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차액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영 제75조 제3항 제1호)

<참고5>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흐름(예시)

- 전일(D-1일) 금융투자회사가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 : 10억원¹⁾
- 전일(D-1일) 마감 기준(24:00)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 400억원²⁾
- ⇒ 당일(D일) 영업개시 전 금융투자회사의 인출가능 금액 : 20억원²⁾(400억원× $\frac{5}{100}$)

- 당일(D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수에 따른 업무처리 필요금액 : 40억원⁴⁾
- 당일(D일) 타행출금이체 요청금액 : 10억원⁵⁾
- 당일(D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도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예탁금액 : 5억원³⁾
- ⇒ 금융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 35억원(10억원¹⁾+20억원²⁾+5억원³⁾)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5억원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충당
- ⇒ 당일(D일) 17:00~18:00 금융투자회사는 의무예치액 30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충당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400억원²⁾+10억원⁵⁾) - 이미 예치되어 있는 금액(400억²⁾-20억원²⁾)

- 다음날(D+1일) 영업개시 전 금융투자회사의 인출가능 금액 : 20.5억(410억원^{y)}× $\frac{5}{100}$)
- 다음날(D+1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수에 따른 업무처리 필요금액 : 10억원⁶⁾
- 다음날(D+1일) 타행입금이체 처리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예탁금액 : 5억원⁷⁾
-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자금 20.5억원으로 10억원⁶⁾의 인출요구 금액을 충당하고 차액결제자금 10억원⁵⁾을 지급
- ⇒ 다음날(D+1일) 17:00~18:00 금융투자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24.5억원*을 인출
- * 이미 예치되어 있는 금액(410억원^{y)}-20.5억원)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410억원^{y)}+5억원³⁾-40억원⁴⁾-10억원⁵⁾)²⁾

- D+2일 영업개시 전 금융투자회사의 인출가능금액 : 18.25억원(365억원^{z)}× $\frac{5}{100}$)
- D+2일 차액결제자금 5억원 수취
- ⇒ D+2일 아무런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면 17:00~16:00 금융투자회사는 의무예치액 13.25억원*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365억원^{z)}-10억원⁶⁾+5억원⁷⁾) - 이미 예치되어 있는 금액(365억원^{z)}-18.25억원)

나. CMA 자금이체

(CMA 개요)

□ CMA(Cash Management Account)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간 사전 약정에 의해 투자자예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특정 금융투자 상품 등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계된 계좌(또는 서비스)를 의미

— 일반적으로 증권 계좌잔액은 금융투자상품 평가액 부분과 투자자예탁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CMA 잔액은 자동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금융투자상품 평가액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참고6> '금융투자상품 계좌(증권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구조' 참조

□ 즉, CMA는 투자자예탁금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자동투자기능과 금융투자상품 등의 자동매도를 통한 자금이체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좌로 이해할 수 있음

— CMA는 이러한 자동투자기능을 통해 통상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시입출금,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 은행 보통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

(자금이체)

□ CMA 잔액*은 투자자예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상품매도 요청을 통한 매도대금 입금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이체지시가 이루어져야 하나 CMA는 고객과의 사전적 약정을 통해 동 매도처리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

* 금융투자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CMA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투자자가 CMA 잔액에 대해 출금지시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도요청, 매도대금 입금, 자금이체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짐
 -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CMA 고객의 출금요청 시점과 실제 환매자금 입금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자기 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입금 처리

(CMA 유형)

□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CMA를 자동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RP형, MMF형, 예금형, 종금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RP형 CMA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해 투자하며 확정금리를 지급

- 투자채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일정 투자적격 이상의 증권 등으로 제한*(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은 시장유동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체 보유채권 중 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증권·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 최저 유지비율을 설정토록 함

- 투자자의 출금요청 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주문이 있게 되면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증권을 환매수하여 출금, 상품 매수 등을 처리

— MMF형 CMA는 자산운용사의 MMF*에 투자하여 실적을 배당

*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통해 조달한 집합투자채산을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CD나 1년 이내의 국채·지방채·특수채 등에 투자·운용(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1조 제1항)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

- 금융투자회사는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로서 투자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자동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투자자의 출금요청 등이 있게 되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해 출금 등을 처리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4항),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일 환매를 허용(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5조 제1항)하고 있음
- 당일 이후 환매이건 당일 환매이건 어느 경우나 출금처리 시점과 실제 환매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증권에 담보(질권)를 설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통해 출금처리를 하고, 환매시점에 취득한 환매자금으로 대출금을 회수·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용
- o 다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는 자기 계산으로 직접 증권을 취득(환매수)할 수도 있는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부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환매자금으로 즉시 출금처리가 가능

— 예금형* CMA는 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며 확정금리를 제시

* 예수금을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예금형(또는 wrap형)으로 부르고 있음

- o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 후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하고, 투자일임업자(통상 계좌개설기관이 겸업)는 이를 자동투자상품으로 지정된 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
- o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자금, 고유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의 출금 요청 등에 응하며, 증권금융회사와의 예수금 정산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보전

*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산과는 무관하게 통상 17:00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짐. 참고로 예수금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 투자자 보유명의로 관리되는데, 실시간으로 증권금융 예수금 보유명의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정산시점에 일괄적으로 명의(지분)변경이 이루어짐

— 종금형 CMA는 현재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서비스로 어음관리계좌(CP Management Account)라고도 부르며,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CMA와는 다른 특성을 지님

○ 투자대상은 잔존만기 1년 이내의 (할인)어음, 채권, CD 등이며, 법상 100분의 50이상을 일정한 어음 등으로 운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32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29조 제2·3항)

* 어음·채권 등의 보유명의 및 운용주체는 종금 겸영 금융투자회사임

○ 종금형 CMA에 편입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이 아닌 종금계정의 수탁금 성격이므로 자금이체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계좌내 투자자예탁금 계정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수행

CMA 유형별 현황
(2010년말 기준)

		RP형	MMF형	종금형 ¹⁾	예금형
취급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취급회사수		26개사	13개사	2개사	11개사
금융투자업종류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종금업	투자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금리지급방식		확정금리	실적배당	확정금리	확정금리
예금보호한도		비보장	비보장	1인당 5천만원	비보장
자금운용대상		채권	MMF	CP, CD, 채권 등	증권금융 및 은행 예수금
수신액	전체	25.1조원(65.2%)	3.5조원(9.0%)	6.1조원(15.6%)	3.9조원(10.1%)
	23개사 ²⁾	24.7조원(64.9%)	3.3조원(8.8%)	6.1조원(16.0%)	3.9조원(10.3%)

주 : 1) 종금형은 동양종금증권(2011.11월) 및 메리츠종금증권(2020.3월)이 종금업 인가 기간 만료시까지 취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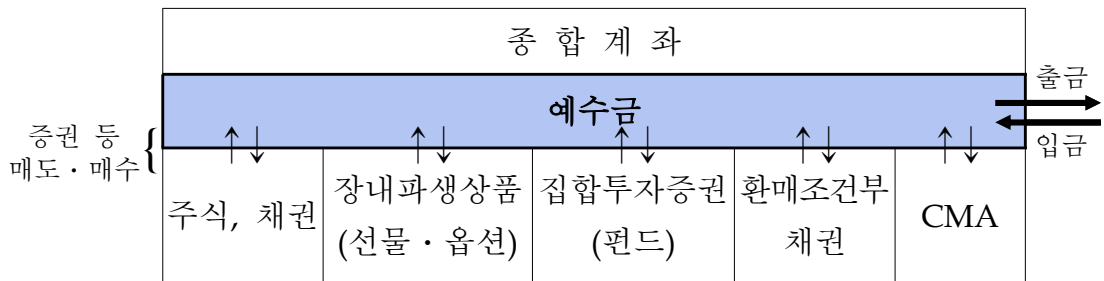
2)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중인 23개사 기준(키움 및 부국 증권은 CMA 미취급)

<참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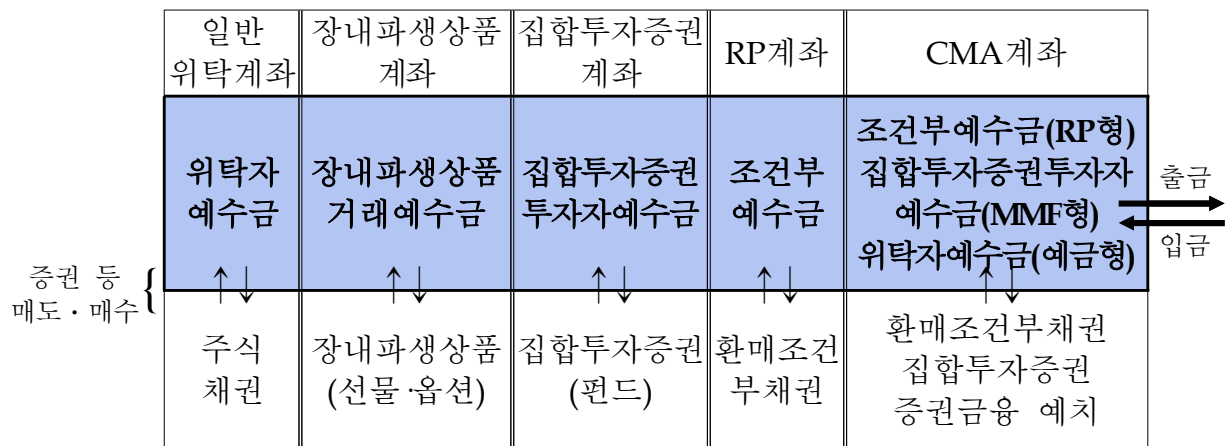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 계좌(증권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구조

- 금융투자상품 계좌는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평가액 부분과 투자자예탁금으로 구성
 - 투자자예탁금은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주식·채권 등의 거래를 위한 위탁자예수금, 수익증권 등의 거래를 위한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으로 구별됨
 - CMA는 자동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금융투자상품 평가액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CMA거래를 위해 예탁되거나 환매를 통해 입금된 예수금은 자동투자대상에 따라 위탁자·집합투자증권투자자·조건부 예수금 등으로 구분
- 한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해 종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단일계좌 내 예수금을 통해 주식·채권·선물옵션·CMA 등의 거래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계좌의 예수금을 통해 각각의 금융상품 등을 거래*
 - * 종합(단일)계좌의 예수금이라 하더라도 업무처리의 실제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 구분하여 예수금이 관리됨

종합계좌(단일계좌)의 경우



계좌번호를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경우



2.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

□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허용 대상을 우선 개인 고객에 한정하고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는 제한

— 동 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반영하기로 관계당국이 합의**

* <규약>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제4조(업무참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제4조(업무참가), CD공동이용업무규약 제4조(업무참가), CMS규약 제2조(업무참가), 지로업무규약 제4조(특별참가), PG규약 제7조(참가기관간 결제)

<세칙> 지로세칙 제6조의 4(지로이용신청 접수), CMS세칙 제7조(이용계좌), PG세칙 제10조(이용신청)

<약관> CMS 이용약관 제5조(이용기관의 의무)

** 재정부 보도자료(“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방안 국회 보고, 2007.6.14), 국회 財經委 金融小委 회의록(제268회 국회, 2007.6.14) 및 국회 본회의 회의록(제268회 제10차, 2007.7.3)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결제원 규약에 근거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 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해석*

* 2008.4.25,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과-104

가. 제한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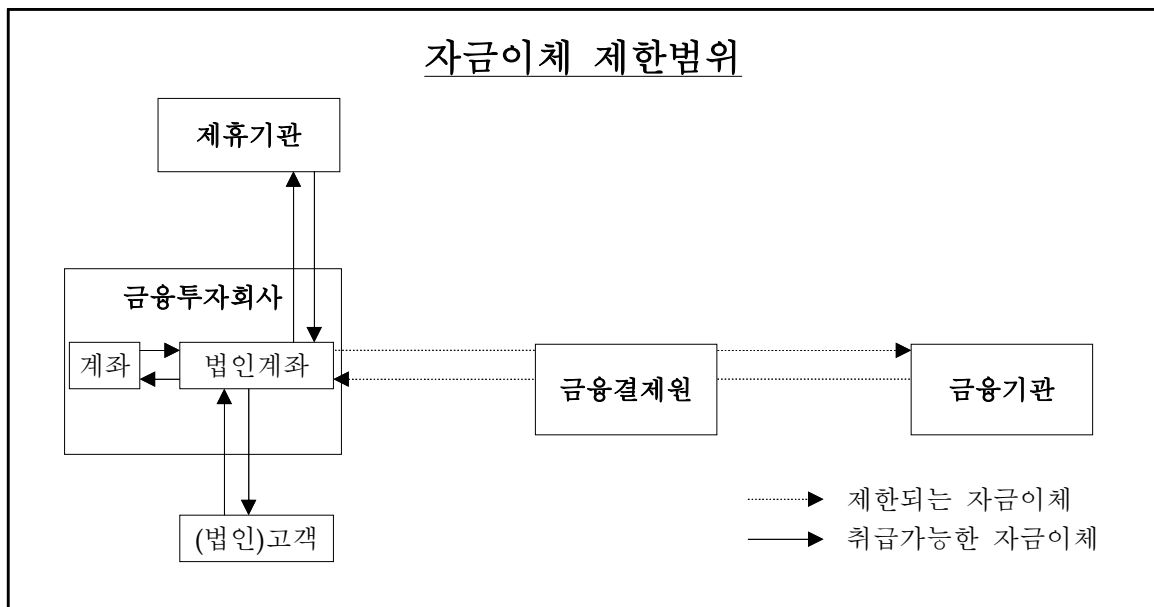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을 계기로 대규모의 기업자금 등이 은행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 계좌로 갑작스럽게 이동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대행은행의 결제유동성 지원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금융투자회사의 차액결제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결제리스크가 증대될 우려

- 또한 대기업 계열 금융투자회사가 계열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결제계좌 유치 등을 통해 당해 그룹 내부에서 결제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나. 제한 대상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결제원 간에 전문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투자회사 내 법인계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출금 거래가 제한대상
- 금융결제원을 통하지 않는 자금이체로서 행내이체(단순 입·출금 또는 동일 금융투자회사 내 고객 간 이체) 또는 특정기관과의 제휴계약 내 지 환거래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별기관간 자금이체는 제한대상이 아님



- 한편, 법인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상 법인으로 확인되는 고객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주체는 그 성격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법인(국가·지자체 포함)·임의단체·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으로 분류되는 단체는 등기를 필한 고유한 의미의 법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①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예:노동조합), ②공익재단(예:사회복지단체), ③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예:종교단체·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법인으로 보고 있음

- 실지명의는 거래주체에 따라 각각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며,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 하되,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은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다. 제한 방식

-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에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을 명시하고 제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규시 시스템 이용제한, 과태금 부과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반영
-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서비스 제한 방식은 타행환·전자금융·CD공동망의 경우 개별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구분·관리하여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입금지시 등을 수신한 경우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법인계좌인 경우 입금거부 등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도록 처리
 - 법인고객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출금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출금지시 등을 수신한 경우 출금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 법인계좌에서 출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
- 지로·CMS·PG업무의 경우 금융결제원은 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근거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
 - 또한 CMS업무에서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법인명의로 수취인 계좌 또는 납부자 출금계좌로 이용

3. 계좌개설 방식별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가. 계좌개설서비스 제공 현황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직접 금융투자회사 창구에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 여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근거계좌를 보유·관리 할 수 있는 기관

- 다른 금융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개설된 증권계좌는 근거계좌*에 연결된 계좌라는 점에서 금융투자회사 창구 방문을 통해 개설된 계좌와는 구별

* 고객이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등이 해당되며, 연결계좌 개설에 근거가 되는 계좌를 말함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증권계좌 실명확인 외부위탁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 실명확인과 이에 의한 금융거래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유권해석에 따라 **근거계좌를 보유·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2835, '10.12.21)

나. 계좌개설 방식별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 다양한 방식에 따라 증권계좌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범위는 해당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범위에 따라 상이

(금융투자회사 창구를 통해 개설된 증권계좌)

- 증권계좌 개설시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였으므로 회사가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없음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 참가업무에 따라 은행계좌와 동일한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이 가능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된 증권계좌)

-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된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계좌이므로 금융실명법 관련 유권해석은 동 계좌의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범위를 근거계좌 및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한정
- 타인명의의 계좌로의 이체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을 통한 창구 출금 등의 거래는 제한
-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금융투자회사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동 계좌에 대해 별도로 실명확인을 한 경우는 자금이체서비스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어짐

*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도 가능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연결계좌에서의 자금이체 등 관련

증권회사의 소액결제망 참가 등에 따라 증권계좌(연결계좌)로의 입금 및 고객 본인명의로 다른 계좌로의 출금(대체출고 포함)은 연결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별도 실명확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나, 타인명의 계좌로의 출금(대체출고 포함) 및 증권회사 영업점을 통한 창구거래 등의 경우에는 최초 거래시 증권회사에서 별도로 연결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거계좌를 보유·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대행한 증권계좌(연결계좌)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재차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고객이 증권회사 임직원(직접 실명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외)을 대리인으로 지정,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위임장을 송부함으로써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을 통해 실명확인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의 인감도장 사용 및 인감증명서 첨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은행과 -2875, '10.12.24)

(인터넷개설 증권계좌)

- 인터넷개설 증권계좌는 근거계좌에 연결된 연결계좌에 해당하므로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범위가 근거계좌로 제한
 - 근거계좌로의 이체는 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여타 계좌로의 이체 및 직접 인출은 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실명확인을 한 계좌만 가능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전화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등에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범위는 연결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체입금하는 경우는 별도 실명확인이 생략될 수 있음 [실명 46000-138, '98. 5. 25]

IV. 업무수행 방식

IV. 업무수행 방식

1. 금융투자회사 참가 소액결제시스템

가. 전자금융 공동망

□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참가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고객에게 타행이체 및 각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대고객업무 : 중계시스템에 접속한 고객에게 금융결제원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계좌·신용카드 조회,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환율안내 등으로 구성
- 중계업무 : 참가기관 시스템에 접속한 고객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중계를 통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운영시간

- 7시부터 23시 30분까지를 공동운영시간으로 하며, 공동운영시간 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

□ 타행이체 한도 및 수수료

- 출금한도는 10억원/건 이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입금한도는 10억원/건으로 정해져 있음*

* 예컨대 A은행 고객이 A은행에 대해 B은행 고객계좌로 타행이체를 의뢰한

경우 A은행(출금은행)은 10억원/건보다 이체한도를 낮춰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지만 B은행(입금은행)은 수취금액을 10억원/건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음

- 고객 수수료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참가기관 간 수수료는 없음

나. 타행환 공동망

□ 창구 방문고객이 거래기관에 상관없이 송금 및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송금업무 : 타행환입금의뢰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송금(지급이체)과 참가기관 간 추심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추심대전송금(추심이체 서비스)으로 구성
- 자기앞수표 조회 : 고객의 조회 의뢰에 따라 참가기관이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표 발행내역 및 사고내역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 운영시간

- 창구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시간은 영업시간과 동일한 9시부터 16시까지이며 금융기관의 내부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운영

□ 송금한도 및 수수료

- 송금한도는 1억원/건이며, 고객 수수료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가기관 간 수수료는 없음

다. CD 공동망

□ 고객이 카드, 통장,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CD(현금자동지급기)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현금(정액권 자기앞수표 포함)지급 및 입금과 잔액조회, 계좌 간 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잔액조회, 지로대금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

* CD/ATM을 이용하여 지로대금을 수납하는 경우 차액결제는 지로차액 결제 내역에 포함되어 처리되며, 서비스 내용(운영시간 7:00~22:00, 이용한도 1억원/건)도 일반 CD 공동망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

□ 운영시간

— 7시부터 23시 30분까지를 공동운영시간으로 하며, 공동운영시간 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

□ 거래한도 및 수수료

— 현금지급 한도는 100만원/건 이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금입금 한도는 100만원/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좌 간 이체의 경우 6백만원/건 이하에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고객 및 참가기관 간 수수료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라. CMS(Cash Management Service)

□ 금융결제원과 CMS 이용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이용기관이 대량자금이체 및 조회 업무 등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96년 5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대량자금이체

- 입금이체(지급업무) : 배당금·연금·급여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지급을 위하여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수의 수취인계좌로 입금(지급)해 주는 서비스
- 출금이체(수납업무) : 보험료·카드이용대금·회비 등의 일괄 수납을 위해 다수의 납부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출금)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서비스

— 이용기관이 수취인·납부자의 계좌 존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내용을 이용기관이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시간 부가서비스를 제공*

* 「CMS공동이용업무시행세칙」(이하 CMS세칙)에는 실시간거래 업무로서 잔액조회·거래확인조회 및 MBR업무(입출금거래명세통지) 등도 규정돼 있으나, 금융결제원은 현재 동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운영시간

— 대량자금이체업무는 이용기관 및 금융결제원·참가기관 간 전문처리 표준시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실시간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만 8시부터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이 있음

□ 이체한도

— 이체한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출금이체의 경우 출금

이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결제원 및 이용기관의 주거래은행(기관)이 월간·건당 출금한도 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CMS세칙 제33조)

□ 수수료

- 주거래은행(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는 양자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름
-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는 이용기관의 접속방식에 따라 다른데, PC접속은 60,000원(기본 4,000건), HOST접속방식은 200,000원(기본 25,000건)임
- 참가기관 간 수수료는 입금이체는 100원/건, 출금이체는 140원 (20원+120원)* /건

* 20원은 의뢰건당 수수료로 출금처리완료·출금불능에 상관없이 부과(비용)되며, 120원은 출금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 이용기관이 CMS 공동망을 통해 이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기관)의 적격성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금융결제원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출금이체를 위해서는 출금에 관한 납부자의 승인(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납부자의 거래기관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기관의 직접접수도 가능

마. 지로시스템

□ 지로시스템은 전기·전화요금 등 대량의 수납거래와 급여·연금 등의 대량 지급거래, 개별송금을 위한 자금이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77년 2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장표지로업무 : OCR·정액OCR·MICR·표준OCR·A·지방세 장표 등*을 이용하여 납부고지 및 수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일반이체와 지방세 수납이체업무로 구분

* OCR·정액OCR·MICR·표준OCR·지방세 장표는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장표로서 거래규모 및 종류에 따라 각 장표의 쓰임새가 다르며, A장표는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장표로 개별송금 및 장표분실 시 사용

— 전자지로업무 : 장표 없이 전자적으로 지급 및 수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자동이체, 대량지급, 납부자자동이체(개별예약송금), 인터넷지로 등이 있음

※ 지로의 자동이체와 대량지급은 각각 CMS의 출금이체·입금이체와 서비스 내용이 동일한데, 양자 간에는 이용기관의 이용승인 요건·이체일·수수료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 운영시간

— 인터넷지로(납부 09:00~22:00)를 제외하고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수납방식(예: 창구, CD/ATM 등)에 따른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을 뿐이며, 전문의 송수신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표준 처리시각이 있음

□ 이체한도 및 수수료

— 이체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지로이용수수료 및 참가기관 간 수수료 체계는 업무 종류에 따라 다름

— 일반이체·자동이체·대량지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

기관에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요금은 접속방식에 따라 PC 30,000원(기본 1,000건), HOST 170,000원(기본 30,000건)임

바. PG(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

□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물품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2000년 12월부터 가동

□ 서비스 종류

— PG서비스 종류로는 신용카드PG, 계좌이체PG, 통신과금서비스 등이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PG는 계좌이체PG 업무를 수행

○ 계좌이체PG는 고객의 상품구매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실시간 또는 익영업일에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

□ 운영시간

— PG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연계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사용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이체한도 및 수수료

— 이체한도는 이용기관 등급 및 거래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며 최고한도는 공공기관 보증금 결제시 1계좌당 1일 10억원

— 수수료는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100원~5,000원 사이

2. 자금이체업무 수행

가. 수행 방식

□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에 대해 자금이체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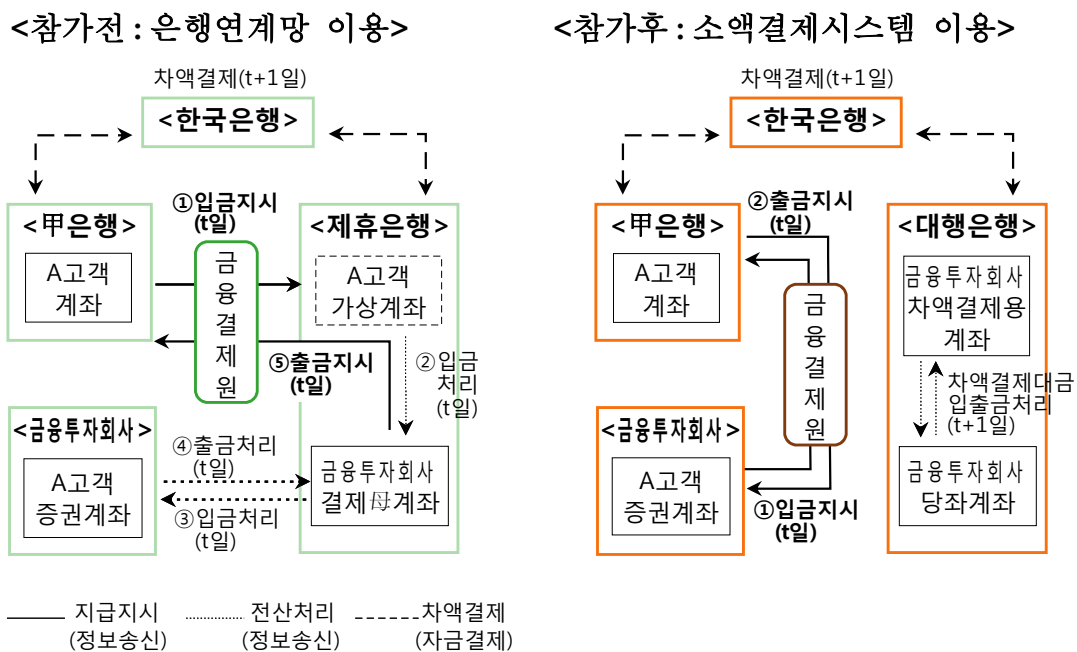
* 다만 차액결제업무는 차액결제대행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자금이체지시를 직접 받아 고객 증권계좌* 잔액 등을 확인한 후 동 이체지시 전문을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송신

* <참고7> '계좌개설처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후 자금이체방식' 참조

— 한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에는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한 제휴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후 자금이체방식



<참고7>

계좌개설처에 따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전후 자금이체방식

1. 은행 위탁개설 증권계좌

* 금융투자회사 예수방식 기준

(참가 전)

- 금융투자회사는 제휴은행과 뽁뽁킹서비스(가상계좌서비스 포함) 계약을 맺고, 투자자예탁금의 입출을 제휴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
 - 이를 위해 고객은 증권계좌와 연계된 제휴은행의 계좌(근거예금계좌 또는 은행가상계좌)가 필요
- 제휴은행의 근거예금계좌를 이용하면 증권계좌 자금의 입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은행가상계좌 이용시 입출금 방법이 크게 확대
 - 은행가상계좌 이용방식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후 증권계좌 이용시와 입출금 방식이 비슷

(참가 후)

- 금융투자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이후 고객이 은행개설 증권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입출금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 기존에는 제휴은행 근거예금계좌(은행가상계좌 포함)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했었음

은행개설 증권계좌 자금의 입출금 가능 여부

구 분	은행 매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			참가 후	비고 (은행 예금)	
		증권계좌 직접이용	근거예금 계좌 이용	은행가상 계좌이용	증권계좌 직접이용		
입금 (이체)	창구	X	X	O	O	O	
	CD	X	X	O	O	O	
	인터넷등	X	□	O	O	O	
출금	현금	창구	△	X	X	△	
		CD	X	□	O	O	
	자금 이체	CD	X	□	O	O	O
		인터넷등	X	△	X	X	△

- 주 : 1) △는 자행 이용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2) □는 근거예금계좌와 증권계좌간 자금이체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2. 금융투자회사 개설 증권계좌

(참가 전)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창구, CD기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은행 이용은 불가능

- 이에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의 펌뱅킹서비스 약정을 통해 각 증권계좌에 은행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써 고객들이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증권계좌 자금을 편리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참가 후)

□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타행환·CD·전자금융공동망 등)에 참가*함에 따라 자사 고객들은 증권계좌 자금 입출금시 은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 은행과 동일한 참가기관이 됨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음

- 자금이체서비스 면에서는 증권계좌가 은행의 수시입출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됨

□ 다만, CD공동망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여전히 제휴은행이 제공하는 펌뱅킹서비스(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들이 은행 CD/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 각 증권카드에 은행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나. 자금이체업무 개시 절차

□ 금융투자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가 필요

- ① 고객의 과거 자금이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순채무 한도를 추정*

* <참고8> '적정 순채무한도 수준 추정' 참조

<참고8>

적정 순채무한도 수준 추정

- 고객에 대해 자금이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자금이체 지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각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처리한 고객 이체지시 자료를 토대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한 이체수요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이체수요의 대부분(예: 전체의 99%)을 처리할 수 있는 순채무한도 수준을 자체적으로 추정 가능

- ② 자금이체 처리에 따른 차액결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대행은행을 선정하여 적정 순채무한도 수준을 반영한 차액결제대행한도에 대해 협의*한 후 대행은행과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

* 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한도가 위탁기관 업종별 전체 한도의 30% 이내 여야 하므로 차액결제대행한도 협의시에는 한국은행과 사전 협의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의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차액결제대행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표준계약서*를 참조

* <별첨>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참조

차액결제 대행계약 필수 반영요소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별표3)

1. 대행업무의 범위와 한도
2. 대행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의무
3.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에 대행한도 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4. 차액결제금액에 관한 당사자 간 정산처리 사항
5. 대행은행의 유동성 지원 및 상황에 관한 사항
6. 차액결제금액 납입지연 또는 미납 시 지연배상 및 담보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행은행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중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에 전질할 수 있다는 취지
8.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적정수준 유지 및 관리 의무
9. 대행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사유
10.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가능 취지
11. 대행계약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

※ 표준계약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준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면 되며, 계약갱신이 있거나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동 변경내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

—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에도 차액결제대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한도의 100% 이상 규모의 일중대출약정을 함께 체결

○ 대출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동 대출은 차액결제자금 용도로만 사용됨을 명시함으로써 차액결제대행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

③ 차액결제대행한도의 100% 이상 규모의 담보를 대행은행앞 제공하여야 함

— 지연배상금, 담보실행 비용 등이 발생함을 감안하여 대행한도의 100% 이상으로 담보제공 금액을 설정

— 적격담보의 종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증권금융에 보유하고 있는 신탁 수익권을 순채무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 가능

④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은행은 한국은행 앞으로 차액결제대행신청서,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 여타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은행은 다음의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심사

* 차액결제대행업무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 차액결제대행계약서, 순채무한도 설정협의서, 일중당좌대출계약서

*** <별첨>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및 2-2. '순채무한도 설정협의서' 참조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

1. 대행은행의 자격조건

— 대행신청일 직전 분기말 BIS 자기자본비율 및 직전 월말 원화유동성 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2. 차액결제대행 집중방지 기준

— 개별 대행은행의 위탁기관 업종별 대행한도 합계가 전체 대행은행의 해당 위탁기관 업종에 대한 대행한도 합계의 30% 이내일 것

3. 결제리스크 관리기준 반영

— 대행계약에 세칙 <별표3>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것

⑤ 대행업무 승인을 받은 대행은행은 자신의 담보증권에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및 순채무한도 대상외거래의 담보분을 포함하여 필요담보증권 규모를 계산하여 동 금액 이상을 한국은행에 담보

로 제공

- ⑥ 대행은행은 한국은행 앞으로 순채무한도 적용 희망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설정 금액을 통보

다. 자금이체업무 개시 시점

- 대행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대행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순채무한도 적용일부터 자금이체업무를 수행 가능
 - 고객의 자금이체 요청에 대해 실시간자금이체(전자금융·타행환·CD·공동망)는 순채무한도내에서, 순채무한도대상외거래(지로·CMS·PG)에 대해서는 차액결제대행한도에서 순채무한도를 차감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체를 처리
-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시 고객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이체서비스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순채무한도를 유지·관리할 의무
 - 고객의 자금이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대행한도 및 순채무한도를 변경

라. 차액결제

- 금융투자회사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자금이체에 대한 차액결제업무를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차액결제 정산 결과 금융투자회사에게 순채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오전 차액결제시각(11:00) 이전*까지 은행앞 차액결제금액을 입금할 의무

* 구체적인 납입 시한은 차액결제대행약정에서 별도 정함

— 대행은행은 금융투자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차액결제금액을 정산

—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행은행은 차액결제대행계약시 함께 체결한 여신약정에 따라 일중유동성을 제공하여 위탁기관을 대신해 결제채무를 이행

o 금융투자회사는 당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동 대출금액을 상환

□ 차액결제 정산결과 순채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순서로 차액결제업무를 수행

① 차액결제담당부서가 오전중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차액결제금액과 자체 집계금액을 확인·대사

② 오전 차액결제시각 이전까지 대행은행에 개설된 차액결제전용계좌 앞으로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은행앞 입금사실 통보**

* 대사결과 결제금액이 상이하더라도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된 차액결제금액 기준으로 우선 결제한 이후 결제내역을 재대사

** 결제금액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은행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

③ 차액결제가 처리되면 정상결제 여부를 확인

□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와 차액결제대행은행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

① 금융투자회사가 오전차액결제시점(11:00)까지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일중당좌대출이 발생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대행은행에 차액결제대금 미납 사유를 통지하고 자체 Contingency Funding Plan에 따라 결제유동성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행은행과 일중당좌대출* 상환 계획 등을 협의

* <참고9>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용 계좌에 대한 일중당좌대출 관리' 참조

- 대행은행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 미납 사실을 한국은행에 지체 없이 유선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와의 일중당좌대출 상환 계획 협의 결과 등을 보고

② 금융투자회사가 영업마감시각(예: 17시)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중단조치에 대비하여 대고객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방안(은행 펌뱅서비스 이용 등)을 준비

- 대행은행은 「차액결제대금 대납상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앞 송부

* <별첨>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참조

- 대행계약 지속 시에는 일중당좌대출을 당좌대출 등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순채무한도 감축 등을 실시
- 대행계약 해지 시에는 즉시 한국은행앞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대행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소액결

제서비스 제공 중단을 금융결제원 앞 요청

* <별첨>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참조

- 중단시점까지 이루어진 자금이체거래에 대해서는 대행은행이 익일(D+1일) 오전 차액결제를 이행

<참고9>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용 계좌에 대한 일중당좌대출 관리

- 은행은 위탁기관과의 차액결제대행계약 체결시 대행한도 이상의 일중유동성 한도 제공 계약을 체결할 의무

— 동 유동성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자금 부족 발생시에만 제공되도록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을 여신약정서에 명시

- 그러나 대행은행이 차액결제용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계좌를 여타 자금의 결제용으로 함께 이용하게 될 경우 차액결제용이 아닌 여타 용도로 일중당좌대출이 발생할 가능성

- 따라서 대행은행은 차액결제용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하는 계좌를 가급적 차액결제 관련 자금의 입·출금용으로만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

— 동 사항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수행시 중점 검사 항목

3. 차액결제대행업무 수행

가. 차액결제대행계약의 체결

- 리스크 관리의 내용은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을 일정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핵심사항을 지급결제제도의 한 요소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결제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일정 사항들은 당사자 간 차액결제 대행계약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행·금융투자회사는 T/F를 구성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음
- 차액결제 대행계약 및 차액결제 대행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기본사항

- ①-1. 차액결제 위탁기관 및 차액결제 대행은행의 명칭
 - ①-2. 차액결제 대행업무의 범위
 - ①-3. 대행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의무
 - ①-4. 차액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 또는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①-5.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 차액결제 대행 관련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계약의 기본사항으로서 계약체결의 당사자 및 대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

〈대행계약 예시〉

주식회사 OO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금융투자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한은행금융결제망(이하 “신한은행금융망”이라 한다)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대행업무의 범위)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한다.

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2. 타행환공동망 업무
3. CD공동망 업무
4. CMS공동망 업무
5. 지로 업무
6. PG 업무

제○조(대행은행의 업무) ① 갑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을의 차액결제금액에 대하여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한다.

② 을에게 차액결제채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신한은행금융망을 통해 을의 차액결제금액을 납입하여 결제를 종결시켜야 한다.

제○조(대행업무 수수료) ① 대행업무 수수료는 월 ○○○만원으로 정하며, 매 월 마지막 영업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가 월중에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월 마지막 영업일 또는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제○조(대행업무의 범위)의 대행업무를 개시한 후 을은 전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조(기타)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해 처리한다.

①-6. 차액결제금액 정산에 관한 사항

①-7. 위탁기관의 차액결제금액 납입지연 또는 미납 시 지연배상 및 담보 처분에 관한 사항

차액결제 대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임사무

처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취득금 정산 처리과정 등을 차액
결제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위탁기관의 대금 납입지연 또는 미납 시 대행은행의 비용 대납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담보처분 등에 관한 내용 명시

〈대행계약 예시〉

제○조(차액결제금액의 정산) ① 차액결제 정산결과 을에게 차액결제채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한국은행이 정한 결제시각 이전까지 갑에 개설된 을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 차액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차액결제금액을 정산한다.

② 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차액결제금액에 대해 차액결제 자금정산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갑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중당좌대출을 실행하며, 을은 당일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일중당좌대출금액을 전항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차액결제 정산결과 을에게 차액결제채권이 발생한 경우 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취하여 갑에 개설된 을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조(당좌대출 등) ① 을은 갑이 차액결제업무 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과 당좌예금 개설,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의 이용 및 상환에 관한 조건, 이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전항에 따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조(담보의 처분) ①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이 제공한 담보를 법정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② 신탁의 수익권 또는 갑에 개설된 을 명의 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갑은 갑의 채권과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갑은 담보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처분하거나 이를 시장매매가격으로 매입하여 을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①-8. 차액결제 대행계약의 유효기간

□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명시

〈대행계약 예시〉

제○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9. 해지에 관한 사항

□ 해지계약 및 약정해지사유로서 임의(보통)해지와 즉시(특별)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즉시해지에 관한 사유 중 다음의 사항을 규정

- i) 대행은행이 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해지
- ii) 대행은행이 한은금융망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탁기관의 해지
- iii) 위탁기관이 제공한 담보금액이 대행한도에 미달하고 담보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행은행의 대행한도 감축요구에 위탁기관이 불응하여 대행은행이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행계약 예시〉

- 제○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이 제○조(대행한도의 설정) 제○항에 따라 대행한도 감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응하지 않은 경우 갑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의 BIS 자기자본비율(매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영업일에 직전 분기 비율을 확인하되, 해당 비율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분기 중에 확인한다)이 2분기 연속하여 8%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신한은금융망 이용 제한·중지·관련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을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해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4. 행정처분이나 법령 등의 개폐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해지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이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①-10. 대행계약은 한국은행의 차액결제 대행신청 승인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

□ 차액결제 대행신청의 승인여부가 대행계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신청의 승인이 계약내용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내용 실현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행계약 예시〉

제○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갑의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대행신청」에 대한 한국은행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행한도 및 순채무한도 설정·관리

- 대행한도는 위탁기관과 대행은행이 협의하여 정하되 순채무한도의 경우 순채무한도 초과로 지급지시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수준으로 설정
- 순채무한도 등록에 관한 절차는 대행은행이 수행하며, 위탁기관은 순채무한도 소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순채무한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대행계약 예시〉

제○조(대행한도의 설정 등) ① 제○조(대행업무의 범위)에 따라 갑이 을을 위하여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한도(이하 “대행한도”라 한다)는 ○○○억 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과 협의하여 대행한도 범위내에서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변경한다.

③ 갑과 을이 순채무한도 설정 및 변경에 합의한 경우 갑은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대해 을의 순채무한도 설정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④ 을은 순채무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금융결제원에 조회함으로써 순채무한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조(담보의 처분)에 따른 담보처분으로 담보금액이 차액결제업무 대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금액보다 적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대행한도를 부족한 금액만큼 감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 및 환불일에 자금이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순채무한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은행과 사전 협의할 필요

— 청약 및 환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은행연계망으로 자금이체를 처리

— <대행계약 예시> —

제○조(공모주 환불) ① 을은 공모주 청약 및 환불에 관한 일정을 갑에게 통지하여 대행한도 조정 또는 펀딩계약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모주 청약 및 환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담보 제공 또는 서비스의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일반금융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③ 담보의 제공

□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대행은행의 차액결제 이행 부담이 가중되거나 이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은 대행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 다만 지연배상금, 담보실행 비용 등이 발생함을 감안하여 대행한도의 100%이상으로 담보제공 금액을 설정

— 적격담보의 종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참고10> '신탁수익권의 담보제공 및 실행' 참조

- 금융투자회사가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행은행의 담보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상계가 가능하도록) 유질(流質)에 관한 약정체결이 필요
-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에 자신과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및 반기 중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증권으로 제공
 - 대행은행이 위탁기관으로부터 국채, 정부보증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동 증권을 한국은행에 전질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대행계약 예시〉

제○조(담보의 제공) ① 을은 차액결제 대행을 위하여 대행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
2. 갑에 개설된 을이 지정하는 을 명의 계좌의 예금
3. 국채, 정부보증채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담보

③ 전항 제1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갑과 을은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유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질물을 한국은행에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본다.

<참고10>

신탁수익권의 담보제공 및 실행

-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맡기고 자금운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함
- 별도예치 방법 중 예수금 예치의 방법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효과(구분예치·운용지시)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는 예수금 예치를 통해서는 투자자예탁금과 관련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 →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신탁재산을 대행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지시 →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탁의 수익권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 유질계약 체결을 통한 대행은행의 담보실행
 - 입질된 금융투자회사의 채권을 증권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증권금융회사가 대행은행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 상계함

④ 대행은행의 위탁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에도 차액결제 대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

〈대행계약 예시〉

제○조(차액결제금액의 정산) 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차액결제금액에 대해 차액결제 자금정산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갑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중당좌대출을 실행하며, 을은 당일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일중당좌대출금액을 전항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조(당좌대출 등) ① 을은 갑이 차액결제업무 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과 당좌예금 개설,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의 이용 및 상환에 관한 조건, 이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전항에 따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직접 차액결제

□ 대행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영업정지, 파산,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행은행이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의 직접 차액결제를 허용

— 위탁기관은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위해 기존 대행은행에 제공한 담보 해당금액을 한국은행에 결제이행 보장용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른 차액결제 (직접)참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채, 정부보증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으로 한정

다만 직접참가 중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있더라도 결제 부족자금은 공동분담하지 않음

□ 대행계약에는 위탁기관이 향후 대행재개를 전제로 계약의 해지 없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대행계약 예시〉

제○조(직접차액결제참가) ① 을이 갑과의 계약 해지 없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제○조(계약기간), 제○조(계약의 해지), 제○조(손해배상), 제○조(관할법원의 합의), 제○조(기타)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경우 제○조(담보의 제공)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행은행의 자격조건

□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지준예치의무가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일반은행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등의 특수은행)으로 한정

□ 또한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위험이 적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관으로서 차액결제 이행, 기타 채무상환 등과 관련하여 유동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한 기관에 한해 자격을 인정

— 기준요건은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을 따르며, 이에 따라 대행신청일 직전 분기말 BIS 자기자본비율 및 직전 월말 원화유동성 비율이 각각 100분의 8이상, 100분의 100(특수은행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일 것이 요구됨

— 위 기준은 자격 유지요건에도 해당되므로 대행신청 승인 후에도 대행은행은 위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함

⑦ 차액결제대행 집중방지 기준

- 특정 대행은행에 차액결제 대행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심각한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가 내재될 수 있으므로 대행업무 분산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
- 이에 따라 하나의 대행은행은 전체 대행은행의 위탁기관 업종별 대행한도 합계의 30%를 초과하여 해당 위탁기관 업종에 대해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 집중방지 기준은 차액결제 대행신청 승인 이후 대행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탁기관과 대행은행은 기존 대행한도 및 전체 대행한도를 고려하여 대행한도를 변경할 필요
 - 다만 위탁기관의 수와 영업특성, 대행은행의 결제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유예가 가능

⑧ 대행은행의 통보의무 등

- 결제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탁기관이 차액결제금액 정산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행은행은 이를 한국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 자금을 지원받아 차액결제 대금을 납입한 후 당일 중 동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1일 이상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 대행은행은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차액결제 대행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행은행은 대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행 철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나. 차액결제대행업무 승인(철회) 및 승인연장 신청

□ 대행은행은 차액결제대행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차액결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기간의 단순 연장
- 차액결제 대행한도 등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
- 대행계약 철회(다른 은행에 차액결제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

(계약기간의 단순 연장)

□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변경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은행앞 대행승인 신청이 불필요

⇒ 다만 한국은행은 승인가준 충족여부를 재확인할 필요

-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이 계약기간 연장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만료일 일주일 전까지 관련 공문을 송부*

* 사소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액결제대행계약을 함께 송부

- 공문에는 계약기간 연장 외에는 기존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

* <별첨> 2-4.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공문(예시)' 참조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

□ 대행은행은 기존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차액결제대행업무의 범위와 한도, 대행은행의 차액결제이행의무, 위탁기관의 담보제공의무, 계약당사자간 차액결제금액 정산, 대행은행의 유동성 지원 및 상환, 차액결제금액 연체·미납에 따른 사항(세칙 별표 3)

⇒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앞 대행승인을 신청

— 대행한도 변경시에는 사전에 한국은행과 한도변경 규모를 협의*
해야 함

* 대행은행의 한도비중 30%이내 여부 확인 등

□ 한국은행은 승인요건 충족여부를 심사·승인 후 동 결과를 대행은행앞 통보

(계약 철회)

□ 위탁기관이 다른 은행에 차액결제대행을 위탁키로 하고 기존 대행은행과의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기존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앞으로 차액결제대행철회신청서를 철회 예정일 1주일전까지 제출

②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은행은 가능한 빨리(예 : 대행업무 개시 1개월 전) 차액결제대행 승인을 신청

□ 한국은행은 기존 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 철회신청을 승인하고 신규 대행은행에 대해서는 대행승인 처리절차를 진행

4. 결제리스크 관리

가. 운영리스크

(순채무한도 관리)

- 금융투자회사는 순채무한도 부족으로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채무한도 소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순채무한도 관리 담당자를 두고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순채무한도 소진율의 증가시 각 단계별(예: 30%, 50%, 60%, 70%초과 등)로 순채무한도 관리 담당자 앞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 순채무한도 소진율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자금이체 Backup시스템을 구축·이용
 - 순채무한도가 일정수준 이상 소진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이 아닌 제휴은행 연계망(자금이체 Backup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이체 업무를 처리
 - 특히, 자금이체수요가 급증하는 공모주 자금의 청약·환불시 순채무한도 부족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청약자금 환불일 0시부터 은행연계망으로 전환함과 함께 제휴은행 결제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필요
 - 또한 1차 제휴은행의 전산 장애 등에 대비하여 2차 ~ 3차 백업

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

- 순채무한도 소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월중 70%를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순채무한도 및 차액결제대행한도를 증액*

*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담당자간 협의(2009.12)에 따른 지도 사항

(전산시스템 관리)

- 전산시스템이 최대 자금이체 예상건수 처리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

— 공모주 자금의 청약·환불시 자금이체수요 급증으로 제휴은행 연계망을 통한 자금이체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전산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훈련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보완

* 시스템 장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하여 관련업무 부문을 복구·재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또는 절차

— 전산시스템 백업센터 운영을 통해 가능한 최단시간내 업무 복구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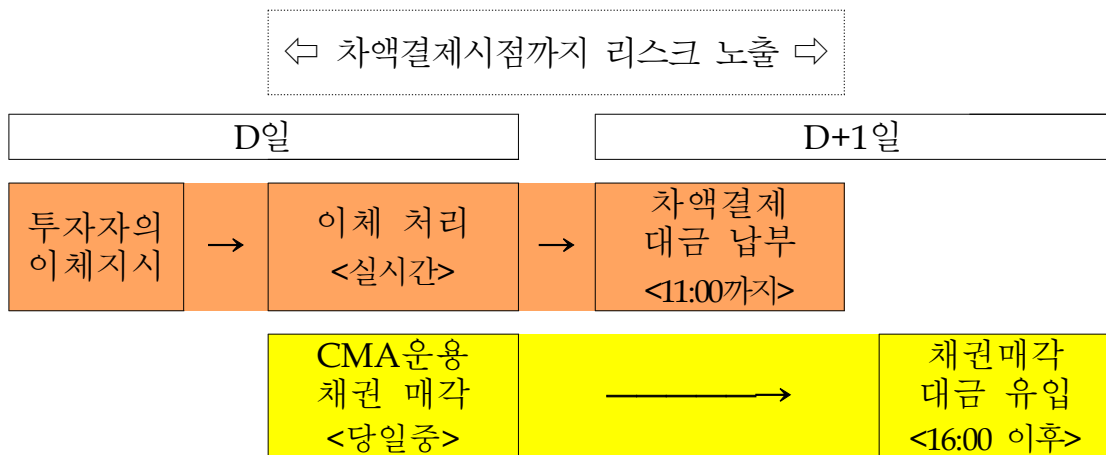
- 전산 장애 발생으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은행 앞으로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통지하고 사고내용, 사고원인 및 사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은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를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 참조

나. 유동성리스크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CMA에서 자금이체를 처리한 경우 동 이체대금을 익일 차액결제시점에 자신의 보유 결제유동성으로 결제
 - 수신자금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RP형 CMA의 경우 고객의 자금이체 처리시 자사의 운용채권 매각 등을 통해 결제대금을 마련하여야 하나 채권 매각대금은 익일 차액결제시점 이후에 유입*
 - * T일 장외시장 및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채권 매도시 매각대금은 T+1일 16:00 이후 유입됨
-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액결제 시점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

CMA 자금이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 금융투자회사의 RP형 CMA 자금이체업무는 구조적인 유동성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함

* <별첨> 2-5.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발체)' 참조

- 전월의 RP형 CMA잔고 대비 5%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확보·유지하고, 전월 RP형 CMA 순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계좌로 매월 누적 관리*

* 다만,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전월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별도관리에서 제외

다. 시장리스크

- RP형 CMA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RP채권 가격 하락시 금융투자회사가 동 손실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노출

* 고객 자금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RP형 CMA는 확정금리를 지급하기 때문

- 채권 운용에 따른 일정 규모의 시장리스크 노출은 불가피하나 CMA는 수시입출식 상품이므로 부채의 만기가 영(零)에 가까워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를 최대한 일치시켜 시장리스크를 감축할 필요

⇒ 금융투자회사는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에 따라 RP형 CMA 편입채권의 헤지후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관리해야 함

*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시장리스크가 커짐

라. 신용리스크

- RP형 CMA에 편입된 RP투자 채권의 신용위험 발생시 결제재원의 손실로 인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 고객의 출금 요청에 따른 자금이체의 결제재원은 RP투자 채권이므로, 동 채권의 부도 발생시 결제이행이 어려울 가능성

⇒ 대고객RP 대상증권을 우량 채권(A등급 이상)으로 운용(금융투자업규
정 제5-18조제2항)

— 또한, 「CMA 업무관련 모범기준」은 동일종목 채권 보유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여 특정 채권종류 편입에 따른 신용리
스크 확대를 방지

* 국고, 통안, 특수, 금융채 AAA 등 위험도 낮은 채권 제외

V. 한국은행의 감시

V. 한국은행의 감시

1.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의의)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
 -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필요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금융감독과 함께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정책목표에서부터 대상, 재권한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음
 - 금융감독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상태이나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임

(법적 근거)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는 한은법 제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의 하위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등에서 감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
 - 한은법 제81조에서는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구 및 운영기준 개선 요청권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

- 이 밖에도 한은법 제87조, 자본시장법 제4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 41조 및 제29조 등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감독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규정

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감시

가. 근거 규정

- 한은법에 근거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서는 소액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채무한도, 담보증권, 차액 결제대행 등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권한을 규정
 - 동 법의 하위규정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

나. 감시업무

-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취급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검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
- 모니터링은 순채무한도·자금이체규모·전산시스템 운영 및 차액결

제 대행 등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주요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 : 금융결제원의 순채무한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 자금이체업무 취급동향, 고객의 계좌이용현황 등 정기(일·월) 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

— 수시 모니터링 : 전산사고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 등 수시 보고서를 통한 모니터링

□ 자료제출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

*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 대상의 축소를 위해 노력

□ 검사 및 공동검사는 자금이체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현장정보의 직접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급적 금감원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활용

□ 감시결과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순채무한도 조정, 주의환기, 시정요구 등을 조치

— 감독당국 및 금융결제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 별첨 >

1. 관련법령 (발취)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2. 한국은행법
- 1-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 1-4. 차액결제대행관련 제 서류
- 1-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2. 기타

-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 2-2. 순채무한도 설정협의서
- 2-3. 장애발생 통보서 서식
- 2-4.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공문(예시)
- 2-5. CMA업무 관련 모범규준 (발취)

<별첨> 1. 관련 법령 (발췌)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40조제4호에 따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은행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38조(투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①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순채무한도를 말한다.

1-2.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0.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12.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9조(순채무한도의 설정) ①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이하 “차액결제참가기관”이라 한다)은 지급지시(지급승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총채가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미결제 순채무액의 상한(이하 “순채무한도”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결제 순채무액은 해당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에서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기간은 총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순채무한도의 조정요구) 총채는 제19조에 따라 설정된 순채무한도가 해당 기관의 과거 순채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순채무한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차액결제대행) ① 차액결제참가기관 중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다른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차액결제참가기관(이하 “차액결제대행은행”이라 한다)은 자신의 차액결제대금에 차액결제를 위탁한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하 “차액결제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차액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차액결제대행의 신청) ① 제25조에 따른 차액결제를 대행하고자 하는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총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의 대행을 신청하고 한국은행과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총채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에 대해서는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8조(차액결제대행관련 담보 관리) ①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제21조에 따른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제공할 경우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으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금액의 계산은 제21조에 따른다.

②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체결한 차액결제대행계약에서 정한 차액결제대행한도 이상을 차액결제대행은행에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차액결제대행은행의 공동분담 등) ① 차액결제대행은행이 제23조에 따라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할 경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분담금은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계

산된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차액결제대행은행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분담금을 상환받는 경우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총재가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 확보)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차액결제위탁기관에 대해 결제리스크 감축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허용) ① 총재는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차액결제위탁기관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차액결제참가기관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담보증권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금액만큼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세칙)

제32조(차액결제 대상거래) 규정 제8조에 따른 차액결제 대상거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신한은금융망의 차액결제 참가기관(이하 “차액결제참가기관”이라 한다)간 거래 및 그 거래에 따른 자금조정으로 한다.

1. 어음교환시스템(외화포시 내국신용장어음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지로시스템
3.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4. 타행환공동망
5. 직불카드공동망
6.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7. 지방은행공동망
8. 전자화폐(K-CASH)공동망
9.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0. 전자금융공동망
11.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2. 국가간ATM망

제59조(순채무한도의 설정대상거래) 규정 제19조제1항의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는

이 세칙 제32조 각 호의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10호 및 제12호의 거래와 제1호, 제9호의 거래 중 차액결제참가기관간 지급지시(지급승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로 한다.

제60조(미결제 순채무액의 계산기간) 규정 제19조제2항의 미결제 순채무액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 영업일 오전 차액결제시점(오전 차액결제를 지연시킨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경우 그 차액결제를 완료한 시점) 이전에는 전 영업일 오전 0시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다만, 국가간ATM망의 경우에는 국가간 시차를 고려하여 당일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개시시점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2. 제1호의 차액결제시점(오전 차액결제를 지연시킨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경우 그 차액결제를 완료한 시점) 후에는 그 영업일 오전 0시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다만, 국가간ATM망의 경우에는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여 익일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개시시점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제61조(순채무한도의 설정) ① 제32조 각 호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차액결제참가기관은 규정 제19조제1항의 순채무한도를 과거 순채무액 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보증권의 사용 또는 처분으로 담보증권금액이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와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결제국장은 해당 기관의 순채무한도를 부족한 금액만큼 감축할 수 있다.
- ③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순채무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에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의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다.
- ④ 금융결제원은 제3항과 관련하여 순채무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62조(순채무한도의 변경)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채무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2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날 중에도 순채무한도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정한 시점까지 담보증권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금융결제국장은 그 한도증액을 즉시 취소한다.
- ③ 한국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순채무한도의 신규설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기관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한다.

제63조(순채무한도의 관리)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채무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금융결제원에 조회함으로써 순채무한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채무한도 초과로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은행과 해당 거래의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한도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3조(차액결제대행의 신청)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차액결제를 대행하고자 하

는 기관은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차액결제대행 신청서와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차액결제위탁기관과 체결한 차액결제대행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 ①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신청일 직전 분기말(직전 분기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분기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2.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신청일 직전 월말(직전 월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말) 원화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하는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3.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따른 개별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위탁기관 업종별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가 전체 차액결제대행은행의 해당 차액결제위탁기관 업종에 대한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의 30% 이내일 것

- ② 한국은행은 업종별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수와 영업특성,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다.

제75조(차액결제대행의 승인) ① 금융결제국장은 제73조에 따른 차액결제대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②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제73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대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대행 철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차액결제대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금융결제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방안의 강구 요구, 충족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여, 차액결제대행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제73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제74조제1항제3호 <별표 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결제국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77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설정·변경)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의 설정·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는 차액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앞으로 통보한다.

제78조(차액결제위탁기관 담보증권의 전질) 차액결제대행은행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담보증권을 제공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위탁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담보 중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경우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으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담보증권은 차액결제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9조(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상황) 규정 제30조에서 “총재가 정하는 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말한다.

1.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에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후 그날 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은행으로부터 1일 이상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80조(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금융결제국장은 규정 제31조에 따른 결제리스크 감축방안 등의 조치를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차액결제위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사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차액결제 직접 참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차액결제대행은행이 규정 제43조에 따라 신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또는 중지, 관련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로 인해 차액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급격한 유동성 악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차액결제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2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①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차액결제 직접 참가의 기간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59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차액결제참가기관으로 본다.

1-4. 차액결제대행 관련 제 서류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별지 제5호 서식>)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본인 :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본인은 귀행에 개설된 본인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신한은금융결제망(이하 “신한은금융망”이라 한다) 참가기관과의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규정준수) 본인은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과의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조(차액결제자료의 효력) 금융결제원이 귀행에 제출하는 차액결제자료는 본인이 이를 귀행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차액결제 대행시의 의무) 본인이 다른 신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부터 차액결제를 위탁받아 그 기관을 위하여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관(이하 “차액결제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차액결제관련 의무는 본인이 이행한다.

제4조(순채무한도의 설정 및 조정) ① 본인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귀행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미결제 순채무액의 상한(이하 “순채무한도”라 한다)을 설정하고 귀행에 통보하며, 본인이 차액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②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순채무한도 조정을 요구할 경우 그 한도를 조정하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차액결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조정한다.

제5조(담보증권의 제공) 본인은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의 이행을 위한 담보증권을 귀행에 제공한다.

제6조(담보증권의 사용·처분)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참가기관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귀행이 정한 방법, 시기, 가격으로 사용·처분하여 취득

한 금액에서 제 비용을 상계한 후 잔액을 본인의 결제부족자금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결제부족자금에 대한 본인의 공동분담금으로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본인은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규정”에 따라 귀행이 정하는 본인의 공동분담금을 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분담금의 상환)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으로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이 본인의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한 경우 본인은 그 분담금에 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제9조(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본인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귀행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의 이용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제10조(면책) 본인은 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행의 책임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재 등) ① 본인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본인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차액결제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행의 시정요구, 신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또는 중지, 이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은 귀행이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본인이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행의 충족방안 강구 요구, 충족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여, 차액결제대행 승인의 취소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해지) ① 이 약정은 본인이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탈퇴신청서”를 해지예정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귀행이 승인한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귀행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은 이 약정 중 차액결제대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대행철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약정에 따른다.

제13조(소송)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귀행 본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대행(철회)신청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별지 제21호 서식>)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기관명
대표자

인

당행(회)은 다음과 같이 신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대행(철회)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결제위탁기관명:	
차액결제대행한도:	억원
(순채무한도):	억원
차액결제 대상거래	적 용 일
1.	
2.	
3.	

첨부서류: 차액결제위탁기관과의 차액결제대행계약서 1부 (차액결제위탁기관별로 첨부)

차액결제대금 대납상황 통보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별지 제22호 서식>)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귀하

기관명

대표자

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30조 및 동 「세칙」 제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차액결제위탁기관명:
2. 발생일자:
3. 차액결제대금 대납내용 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79조 제1호 관련 ○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 ○ 차액결제대금 중 대납 금액 및 조건: ○ 차액결제대금 대납금액 중 당일 미상환금액: ○ 당일 미상환금액에 대한 처리결과: 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79조 제2호 관련 ○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 ○ 차액결제대금 중 대납 금액 및 조건: ○ 대납금액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4. 기타

1-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자료요구의 목적)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기관등에게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요구자료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총재가 금융기관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에게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2. 결산서 등 경영상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경영건전성 상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4.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전산장애, 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지급결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등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다.

제5조(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 금융감독원에게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
2. 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발행자,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전자채권관리기관

제6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한국은행법」과 한국은행의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의 지급결제업무 운영 및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등의 재무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부족상태를 보이거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금융기관등의 영업행태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자금지원 필요성 등으로 금융기관등의 경영상황이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방법) ①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대상기관, 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재는 공동검사 실시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등에게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세칙)

제2조(금융기관등의 제출자료) 규정 제3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기관, 제출자료의 종류 및 제출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서의 장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료요구부서) 제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기한, 양식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서의 장이 정한다.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이하 “금융안정분석국장”이라 한다)
2.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하 “금융결제국장”이라 한다)

제4조(검사부서) 규정 제6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공동검사의 실시, 검사결과 조치 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의 장이 담당한다.

1. 「한국은행법」 제88조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 : 금융안정분석국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 : 금융결제국장

<별표>

1.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제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업무보고서 ¹⁾	월
	결산보고서 ²⁾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³⁾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업무(영업)보고서 ⁴⁾	월
	결산보고서 ⁵⁾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시장의 교란, 금융기관 경영상황이나 영업행태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한국은행 요구시

- 주: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보고서는 분기 단위로 제출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에 한함
 3)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은 제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영업)보고서는 분기 단위로 제출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한함

2.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제출주기
·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업무보고서 ¹⁾	월
	전산사고 및 시스템 장애 보고서	사유 발생시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한 자산관리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자료	한국은행 요구시
· 규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업무보고서 ²⁾	분기
	전산사고 및 시스템 장애 보고서	사유 발생시
	전자지급거래 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자료	한국은행 요구시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 업무 관련 사항에 한함

2)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 관련 사항에 한함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절차)

제4조(업무보고서 등) ① 세칙 제2조의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업무보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② 세칙 제2조의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가. 통신회선 또는 전력공급 장치의 장애

나. 전산시스템 관련 장비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의 부적절한 조작

다. 화재 또는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라. 전산시스템 운영자 파업 등

2.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또는 위규행위가 개재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해킹 등 전산시스템 공격

나.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

다. 비인가자의 내부망을 경유한 전산시스템 공격

라. 테러에 의한 전산설비 파괴 등

3. 이용자 인증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의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의 발생 내용이 중대한 경우 보고서 제출 전에 유선 등을 이용하여 장애 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방법) 세칙 제2조의 <별표> 제2호에 따른 보고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서식>

업무보고서
(자금이체업무 관련)

년 월말 현재

○○회사

업무보고서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주소	

작성범위

I. 자금이체가능 예수금 등 현황

II. RP형 CMA 운용한도

III. 고객의 계좌 이용 현황

IV. CMA 관련 듀레이션 현황

V. RP형 CMA 자산운용 현황

VI. 종금형 CMA 자산운용 현황

I. 자금이체가능 예수금 등 현황

(200X.X월)

(단위 : %, 백만원, 개)

종류 ¹⁾	상품명	지급이자 ¹⁾	잔액		계좌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위탁계좌 (예수금)	투자자예탁금 (장내과생상품거래예수금제외)					
	장내과생상품거래예수금					
CMA	R P 형					
	MMF형					
	예금형					
	종금형 기타 ³⁾					
일반 RP						
기타						

- * 주: 1) 위탁계좌, CMA, 일반 RP 이외의 금융상품은 기재란을 추가하여 기입
 2) 금액,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별표로 기재
 3) 신종 CMA에 대해서는 각주 또는 별첨으로 특기사항을 기재(예: 상품명, 자산운용방식 등)
 4) 계좌수는 정상(활동)계좌 기준

II. RP형 CMA 운용한도

(200X.X월)

(단위 : 백만원, %)

전체 RP운용한도	RP 운용금액	RP형 CMA운용한도	RP형 CMA 편입RP금액	RP제시 수익율	
				최저	최고

Ⅲ. 고객의 계좌 이용 현황
(200X.X월)

(단위 : 개, 백만원)

	위탁계좌		CMA	
	계좌수	예수금 잔액	계좌수	잔액
총 계좌, 잔액				
은행창구개설계좌 ¹⁾				
급여이체계좌				
신용카드 발급				

주: 1) 은행 창구에서 개설된 계좌수 및 잔액

Ⅳ. CMA 관련 듀레이션 현황
(200X.X월)

(단위 : 년)

구 분	헤지전 듀레이션	헤지후 듀레이션
RP형		
종금형		

V. RP형 CMA 자산운용현황
(200X.X월)

RP형CMA

(단위 : 백만원, %)

종류	신용등급	잔액	수익률
국채	-		
지방채	-		
통안증권	-		
일반특수채	AAA		
	AA		
	A		
	기타		
금융특수채	AAA		
	AA		
	A		
	기타		
은행채	AAA		
	AA		
	A		
	기타		
기타 금융회사채	AAA		
	AA		
	A		
	기타		
일반회사채	AAA		
	AA		
	A		
	기타		
기타			
현금			
합 계			

[채권 종류]

- * 일반특수채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일반법인(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행한 채권
- * 금융특수채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발행한 채권
- * 기타 금융회사채 : 카드채, 리스채, 증권금융채, 증권채 등
- * 기타 : ABS, 보증/담보부사채 등(채권종류 및 해당 신용평가등급 또는 보증/담보여부 등을 기재)

* 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서 다음 세 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textcircled{1} r = (1+r_{t,1}) \times (1+r_{t,2}) \times \dots \times (1+r_{t,n}) - 1$$

$$\textcircled{2} r = \frac{MV_1 - MV_0 - CF}{MV_0 + (0.5 \times CF)}$$

$$\textcircled{3} r = \frac{MV_1 - MV_0 - CF}{MV_0 + \sum_{i=1}^n (CF_i \times w_i)}$$

r : 수익률, MV : 시장가격(이자수입 포함)

$r_{t,n}$: 월중 현금흐름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기간(subperiod)중 수익률

$$r_{t,n} = (MV_n - MV_{n-1}) / MV_{n-1}$$

CF : 자사분 자산을 고객분 자산으로 편입한 금액 등의 자금 유출입
(CF = 월중 신규 매입액(자사분의 고객분 이전 포함) - 월중 매각액)

$$w_i = (\text{월중 일수} - \text{현금흐름 발생일 이후 잔여 월중 일수}) / \text{월중 일수}$$

VI. 종금형 CMA 자산운용현황

(200X.X월)

종금형 CMA

(단위: 백만원, 년, %)

구 분		보유액	듀레이션	수익률
채권	국채			-
	통안채			
	정부보증채			
	소계			
할인어음(팩토링 포함)				
CD				
원화대출				
자금팀 유동성				
기 타 ¹⁾				
합 계				

* 주: 1) 세부내역을 각주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

기 관 명 :

발생일시 및 지속기간	
사고내용	
사고원인	
파급영향	
처리결과	
대 책	

<별첨> 2. 기타

2-1.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OO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금융투자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한은행금융결제망(이하 “신한은행금융망”이라 한다)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의 차액결제업무를 갑이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액결제금액: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결제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 금액
 2. 차액결제업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차액결제금액을 신한은행금융망을 통해 정산·결제하는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사무처리 업무
 3. 대행업무: 이 계약에 따라 을의 차액결제업무를 갑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그 하위규정, 금융결제원의 규약 및 세칙과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한다.

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2. 타행환공동망 업무
3. CD공동망 업무
4. CMS공동망 업무
5. 지로 업무
6. PG 업무

제4조(대행한도의 설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갑이 을을 위하여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한도(이하 “대행한도”라 한다)는 ○○○억 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과 협의하여 대행한도 범위내에서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변경한

다.

③ 갑과 을이 순채무한도 설정 및 변경에 합의한 경우 갑은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대해 을의 순채무한도 설정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④ 을은 순채무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금융결제원에 조회함으로써 순채무한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른 담보처분으로 담보금액이 차액결제업무 대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금액보다 적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대행한도를 부족한 금액만큼 감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담보의 제공) ① 을은 차액결제 대행을 위하여 대행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
2. 갑에 개설된 을이 지정하는 을 명의 계좌의 예금
3. 국채, 정부보증채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담보

③ 전항 제1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갑과 을은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유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④ 갑은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질물을 한국은행에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공모주 환불) ① 을은 공모주 청약 및 환불에 관한 일정을 갑에게 통지하여 대행한도 조정 또는 펌뱅크계약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모주 청약 및 환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담보 제공 또는 서비스의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일반금융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7조(대행은행의 업무) ① 갑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을의 차액결제 금액에 대하여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한다.

② 을에게 차액결제채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을의 차액결제금액을 납입하여 결제를 종결시켜야 한다.

제8조(차액결제금액의 정산) ① 차액결제 정산결과 을에게 차액결제채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한국은행이 정한 결제시각 이전까지 갑에 개설된 을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 차액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여 차액결제금액을 정산한다.

② 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차액결제금액에 대해 차액결제 자금정산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갑은 사전 약정에 따라 일중당좌대출을 실행하며, 을은 당일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 일중당좌대출금액을 전항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차액결제 정산결과 을에게 차액결제채권이 발생한 경우 갑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취하여 갑에 개설된 을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당좌대출 등) ① 을은 갑이 차액결제업무 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과 당좌예금 개설,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일중당좌대출 및 당좌대출의 이용 및 상환에 관한 조건, 이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전항에 따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담보의 처분) ① 을이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무와 그 밖의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이 제공한 담보를 법정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② 신탁의 수익권 또는 갑에 개설된 을 명의 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갑은 갑의 채권과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갑은 담보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처분하거나 이를 시장매매가격으로 매입하여 을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무 수수료) ① 대행업무 수수료는 월 ○○○만원으로 정하며,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가 월중에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월 마지막 영업일 또는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제3조의 대행업무를 개시한 후 을은 전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이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행한도 감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응하지 않은 경우 갑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의 BIS 자기자본비율(매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영업일에 직전 분기 비율을 확인하되, 해당 비율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 다음 분기 중에 확인한다)이 2분기 연속하여 8%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신한은금융망 이용 제한·중지·관련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을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해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4. 행정처분이나 법령 등의 개폐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해지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이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직접차액결제참가) ① 을이 갑과의 계약 해지 없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경우 제5조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갑의 「신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대행신청」에 대한 한국은행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해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은행
은행장 ○○○ (인)

을
주식회사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 (인)

2-2. 순채무한도 설정협의를

순채무한도 설정협의를

OO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증권(이하 '을'이라 한다)은 차액결제대행 약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을의 순채무한도를 00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하며 이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갑
OO은행
자금부장 (인)

을
OO증권
자금부장 (인)

2-3. 장애발생 통보서 서식

장애발생통보서*

* (금융결제원 업무별 시행세칙)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정보시스템부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OOO망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합니다.

장 애 발 생 일	
장 애 발 생 시 간	
장 애 복 구 예 상 시 간	
장애발생 종류 (H/W, S/W)	
장 애 발 생 시 스템	
장 애 사 유(구체적으로)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①인

2-4.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공문(예시)

차액결제대행계약 연장 통보

수신자 : 한국은행 총재

수신참조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인 ○○회사와의 기존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 세부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계약사항 및 일중당좌대출약정에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계약기간	2010.○.○~2011.○.○(1년)	2011.○.○~2012.○.○(1년)
- 수수료(예)	000만원	000만원
:	:	:

붙임 : 차액결제대행계약서사본 1부. 끝.

○○은행장(인)

2-5. CMA업무 관련 모범규준(발취)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발취)

(2009.9.9개정)

[RP투자형 CMA의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및 모니터링 실시

- 전체 RP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듀레이션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 헤지 등을 규율하는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
 - 금리급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고객 출금 요청시 운용상품의 환매거래 완료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감사는 리스크 관리부서의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정기 점검

2. 리스크 관리기준 반영 사항

(1) RP 운용한도

- 자기자본, 상품 유가증권 운용 한도,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
 - RP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직전 대비 회사가 정한 비율 이상 증가시(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경우에는 증가시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필요

(2) 동일인 발행 채권 등 보유한도

-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사전 승인 취득
-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AAA)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 보유한도 적용 예외가능**

(3) 채권 신용도 점검

□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 신용도 변경시 채권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4) 유동성 관리

□ (시장유동성) 전체 보유채권 중 유동성이 비교적 뛰어난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의 **최저 유지비율** 설정

- 편입채권의 만기일과 고객의 출금요청일 사이의 만기불일치(mis-matching) 최
소화

□ (자금조달 유동성)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조달방안을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에 반영

□ (현금성 자산 확보·관리) 고객의 출금수요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을 확보·관리하고 일일점검

- *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장기성 예금’**
을 포함하되, **사용이 제한된 자산은 제외**

① (기본보유비율)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대비 **5%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 유지

② (별도계좌관리) 전월의 RP형CMA 순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매월 누적 관리

- 다만,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전월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별도관리에서 제외

· 별도관리비율

전월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별도관리비율
10% 미만	7%
10% 이상 ~ 15% 미만	5%
15% 이상 ~ 20% 미만	3%

* (전월의 일평균 현금성 자산) ÷ (전월의 일평균 RP형CMA 잔고)

(5) 듀레이션 관리

듀레이션 한도를 해지후 6개월 이내로 설정 및 일일 점검

- CMA자금의 수시입출 성격 등을 감안, 운용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듀레이션 한도를 설정하고 일일 점검 및 경영진 보고

(6) 리스크 헤지(hedge)

리스크헤지 기준 마련 및 일일 점검

-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리스크헤지 기준을 마련·운용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동 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정기(분기 1회 이상) 점검